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·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에 입소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

-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종료가 된다.
- ③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인정유효기간 변경 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.
-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(2026년도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장기요양인정 등급	1일당	월 급여액 (30일 기준)	본인부담금			
				일반	감경대상자		기초생활 수급권자
					20%	12%	
급여	1등급	93,070	2,792,100	558,420	335,052	223,368	면제
	2등급	86,340	2,590,200	518,040	310,824	207,216	
	3, 4, 5등급	81,540	2,446,200	489,240	293,544	195,696	
비급여	식사재료비	11,400	30일	342,000			1일*3회
	간 식	1,000	30일	30,000			1일*1회
	경관영양	11,400	30일	342,000			1일*3회

4. 이용료 납부

-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

- ② 시설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매월 말일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용료를 청구한다.
- 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에 납부한다.
- ④ 본인부담금은 시설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매월 초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월 장기요양이용급여명세서를 문자로 전송한다.

5. 이용료 및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②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③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⑤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⑦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받을 권리가 있다.
-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권리가 있다.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⑨ 입소자는 가족,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⑩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7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등의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, 비용 등을 책임져야 한다.
- ⑦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8. 계약의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